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지 분양 등의 요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가 사업의 부도, 경영
상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당초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2회 이상 실시하였는데도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분양 또는 매각공고를 산
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주민지원기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
도 주민지원기금”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연도 2
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성 재원 및 규모

2. 운용 실적

- 가. 지원 목적
- 나. 지원 기간
- 다. 지원사업의 내용
- 라. 지원 금액
- 마. 지원 대상지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정명령 등) ①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시정명령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또는 제4항에 따

른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여부와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의제기 방법 및 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별표 3 제4호의 사업 내용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형식의 사업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6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 관련)

부과대상	금액
1.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자	3천만원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한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	3천만원
3.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한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	2천만원

<신 설>

<신 설>

<신 설>

환경부장관에게 -----.

1. 조성 재원 및 규모

2. 운용 실적

가. 지원 목적

나. 지원 기간

다. 지원사업의 내용

라. 지원 금액

마. 지원 대상지역

제34조의2(시정명령 등) ① 법 제 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시정명령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여부와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③ (현행과 같음)